

# 소재·부품·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계획(안)

## □ 추진 배경

- 소재·부품·장비 대책\*의 후속조치로 연구개발혁신 지원을 위한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'공동관리규정') 개정 추진
  - ①정책지정 근거 명확화, ②수요기업 지원 강화, ③특허전략수립 지원 제도화 내용을 반영

\* 「소재·부품·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」 ('19.8.28/과기정통부)  
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」 ('19.8.5/산업부)

## □ 주요 개정사항

### ① 정책지정(Fast-track) 근거 명확화

- 국가 주도로 R&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,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

### ② 수요기업 지원 강화

- 정부R&D에 대·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기준을 중소기업 수준\*으로 완화
  - \* (현행) 대기업인 경우, 총 연구개발비의 50%이상 부담 → (개선) 25%수준 부담
- 대·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&D성과(제품·부품·서비스 등)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% 이내 가점 부여

### ③ 특허전략(IP-R&D) 수립 지원 제도화

-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·확보하기 위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·개발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\*

※ 다만 기초연구과제,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·개발연구과제,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,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

## □ 향후 일정(안)

- 입법예고('19.12월) → 법제처 심사('20.1월) → 차관·국무회의('20.2월)